

IT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RFID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심으로

김 영 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첨단 정보기술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명실상부한 IT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보 인프라 측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전자행정, 사이버 교육 등과 같은 정보기술 활용 측면에서도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범죄, 사이버 중독, 개인정보침해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개인에 관한 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개인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의미와 파급효과에 대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정보'에 관한 각종 문제점들이 확산되면서 IT 기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큰 화두가 되었고, 이미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RFID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RFID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확대 우려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RFID란 전자태그 (TAG)를 사물에 부착하여 사물이 주위 상황을 인지하고, 기존 IT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기술이다. 특히 RFID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RFID 태그는 위치 정보, 운동 패턴,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거나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특히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특성으로 인해 RFID 태그가 탑재된 물건은 거리를 두고 있더라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개인 정보의 노출 위험이 높아진다.

RFID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먼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RFID 시스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RFID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간으로 정보교환·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RFID 기술을 통해 물체나 동물, 사람 등을 판독·추적·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시대의 최종 사용자측 정보수집 채널로 활용할 수 있고, 현재 물류·유통 뿐만 아니라 전자지불·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문제는 RFID 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정적 요소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프라이버시 제로(Privacy Zero)’ 사회가 도래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이를테면, 각종 물건들에 내장된 RFID 칩들은 수많은 RFID 리더기에 의해 개인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정부나 기업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들의 사생활이 감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RFID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먼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RFID 시스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RFID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RFID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RFID 취급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FID 태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용자에게 미리 개인정보의 기록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RFID 프라이버시보호 적용대상, RFID를 통한 개인정보 기록·수집 및 연계 제한, RFID태그의 부착사실 및 기능제거 방법의 표시 등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RFID 리더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RFID 리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누구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RFID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정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외국 입법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율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의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통과된 법은 없다.

따라서 먼저 가이드라인의 형태를 정형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단계적인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K**